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 일시 2014. 11. 4(화) 15:00~17:00
- 장소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인 사 말 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토론회 개최를 더욱 의미있고 뜻 깊은 자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발걸음 해 주신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홍준형 교수님을 비롯하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자문위원이신 장영수 교수님, 재무행정 분야 권위자이신 박정수 교수님, 복지 전문기자 김동섭 차장님,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송준호 공동대표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노옥 센터장님, 기획재정부 이명선 팀장님과 안전행정부 최두선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전담기구로서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반부패 정책 업무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법령 위반이나 지위·권한 남용 행위 방지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재산

관리, 계약 업무 추진과정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예산낭비와 관련한 부패 행위 방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예산 확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지원금, 복지보조금, 연구 개발비 등 거의 모든 재정분야에서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여 재정누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찍이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3년에 부정청구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링컨이 만들었다고 하여 일명 ‘링컨법’이라고도 불리우는데 당시 링컨 정부는 링컨의 북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던 군수업체들이 저질 군수품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바람에 정부재정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리를 정부가 일일이 찾아내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관계로 납품업체의 부정을 고발하는 자에게는 미국 정부가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벌금의 최대 50%까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링컨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비리 증거를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내부 근로자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고발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는 군수업체들이 선불리 납품비리를 저지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단순히 사후적으로 부정청구자에 대한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낭비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단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이 갖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줄줄 새나가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범정부 차원의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하였고, 지난 1년간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729건을 접수·처리하여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의 환수가 예상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과 관련한 환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정수급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미래 지출을 위한 건전 재정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징벌적 환수제 도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100대 과제 중 하나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한 정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등 재정적 손실을 끼칠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정청구금지법을 통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5조2천억원을 환수하는 등 부정수급 근절과 인식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나랏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또한 허위·부정청구자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징벌적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법불비로 인한 재정낭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숙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부정수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법안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국회부의장 정갑윤입니다.

먼저, 국가적 당면 과제인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할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제정방안에 관하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국가 예산·결산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부의장으로서 오늘 토론회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7년 32조원 규모이던 국고보조금 사업이 올해는 고용·복지·연구개발·문화체육 등에 52조5천억으로 국방예산(37조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내년 복지예산은 115조5천억원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검찰과 경찰이 적발한 보조금 부정수급액만 1700억원이 넘고, 올 들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통해 적발한 것만 33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부 예산이 부정수급 등으로 줄줄 새는 사례는 하루가 멀다하고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허위·부정청구로 공공재정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는 단순히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마저 잠식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패방지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언론에서도 사설이나 뉴스 등을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철저한 환수에만 매몰되어 우리 사회가 품고 배려해야 할 경제적 약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어 입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나랏 돈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정수급으로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고자 하시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 봅니다.

허심탄회하게 고견을 개진하시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국회 차원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 이후에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모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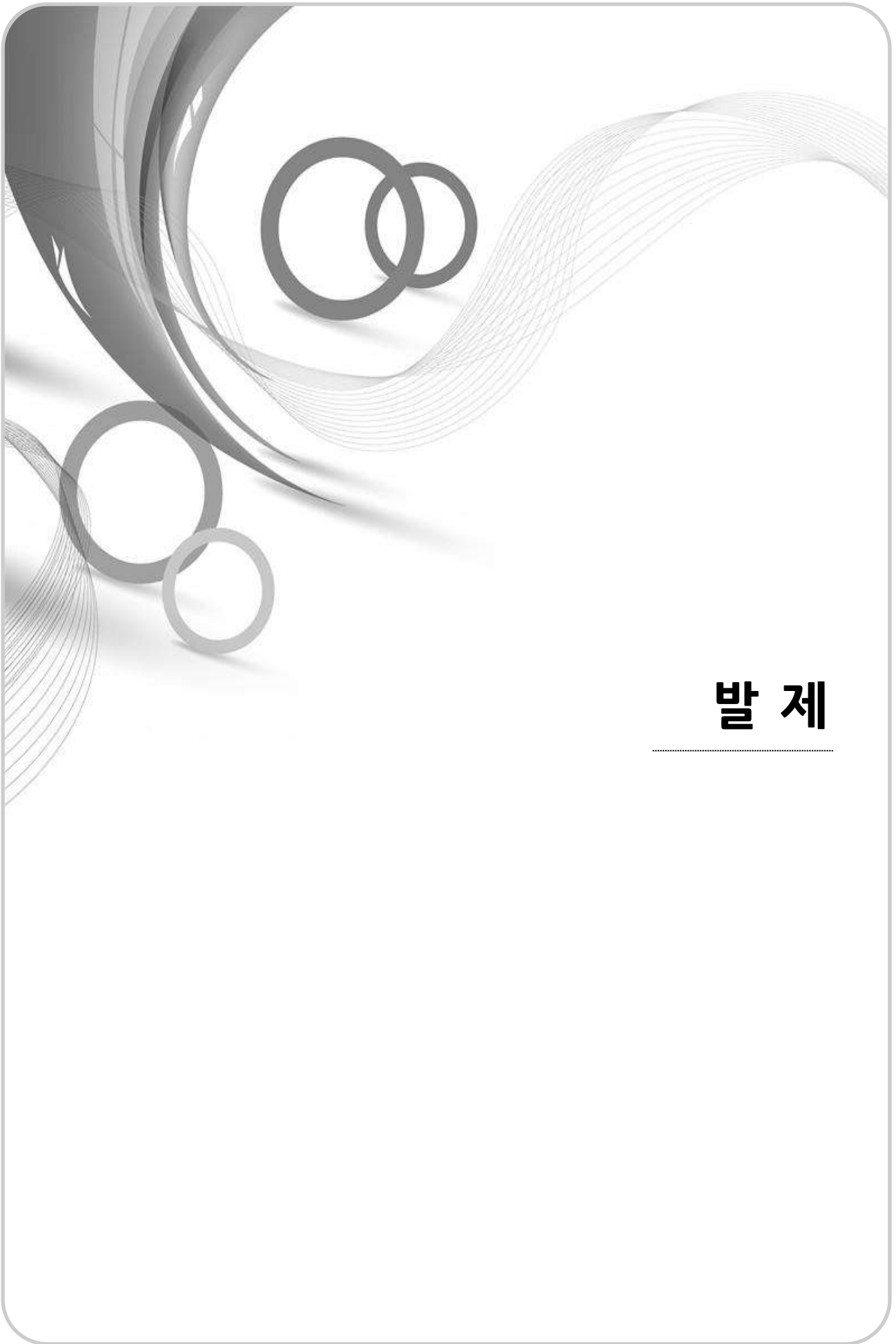
어느덧 11월입니다. 깊어진 가을만큼 이제는 제법 스산한 바람이 겨울이 멀리 있지 않음을 느끼게 해 줍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5:00~15:02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안 준 호 (청렴총괄과장)
	15:02~15:09	07'	■ 인사말씀	이 성 보 (국민권익위원장)
	15:09~15:14	05'	■ 외빈축사	정 갑 윤 (국회 부의장)
참석자 소 개	15:14~15:20	06'	■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홍 준 형 (서울대 교수)
발 제	15:20~15:40	20'	■ 주제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박 계 옥 (부패방지국장)
토 론	15:40~16:50	70'	■ 토론(7인) - 장 영 수(고려대 교수) - 박 정 수(이화여대 교수) - 송 준 호(홍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 김 동 섭(조선일보 기자, 전 논설위원) - 박 노 옥(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 이 명 선(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 - 최 두 선(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토론자 1인 각 10분
자 유 토 론	16:50~17:00	10'	■ 사회자 진행(정리 및 질의응답)	홍 준 형 (서울대 교수)
폐 회	17:00		■ 폐회	안 준 호 (청렴총괄과장)



발 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국장 박 계 옥

목 차

I. 추진배경	1
II. 법제화 필요성	3
III. 법제화 주요내용	16
제1장 총칙	17
제2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20
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	20
2.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25
3.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절차	35
4. 부정청구등 방지 실효성 확보장치	40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46
IV.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	49
참고 1. 공공기관 예산 부정집행 관련 권익위 사건처리 분석결과	51
참고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58
참고 3.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	59
〈첨부〉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 대통령님 말씀사항 >

- ◆ 단돈 한 푼이라도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14.2.24, 산업부 업무보고)
- ◆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보조금이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음.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 잡겠음('14.1.6, 신년 기자회견)

□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의 증대, 인구고령화 등 재정압박 요인의 확대에 따라 재정집행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가

-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미래 지출을 위한 건전 재정 유지 강조('14.2.25)
- 공공재정의 효율성 향상은 공공재정 누수 관행 개선이 필수 조건

□ 그러나, 현행 관리체계는 재정누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예방에 있어 한계를 노정

- 보조금법 등 개별법상 통제장치는 해당 사업에만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의 재정누수 행위의 예방과 통제가 곤란
- 특히,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재정누수는 은밀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법령의 미비로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 공공재정 낭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

- 침해된 재정 환수 원칙과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 중심의 관리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

☞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징벌적 환수제 도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00대 과제 포함

<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일정 >

□ 추진경과

-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시 법률 제정 필요성 제기('14.2.5)
- 국내 입법 사례 및 주요 해외입법 사례 분석('14.2~5월)
 - ※ 미국(False Claims Act), 영국(Proceeds of Crime Act 2002) 등
- 허위·부정청구 현황, 환수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14.6~7월)
 - ※ 공단 등 10개 공공기관 현장조사
 -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42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서면조사
-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14.7~8월)
 - ※ 관련 전문가('14.6.29., '14.7.3., '14.7.4.), 공직유관단체('14.8.6.), 지자체('14.8.7.) 환수업무담당자 대상 간담회 실시
 - ※ 헌법, 행정법, 형사법, 행정학, 민사법 교수 11인 전문가 자문 실시
- 법안 마련 및 제정이유 작성('14.8.~9월)
- 관계부처 협의('14.10.2~'14.10.20) : 18일

□ 향후 추진 일정

- 대국민 입법예고('14.10.14~'14.11.23.) : 40일
 - ※ 공개 토론회('14.11.4.)
- 부패영향평가, 통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14.11월)
- 법제처 법령심사('14.12월)
-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심의·의결, 국회제출('14.12월)

Ⅱ

법제화 필요성

1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 심각

○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공공재정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

- 허위·과다계상 청구, 연구개발비 편취, 지원금 목적외 사용, 품질기준 미달 제품 납품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빈발

※ 최근 4년('11년~'14.9월)간 부패행위 이첩사건 470건 중 국가보조금, 기금 편취 관련 사건이 270건으로 57.4%에 해당(권익위)

(단위: 건)

구 분	합계	보조·지원금	관급공사	계약·납품	단속·수사	예산·회계	인허가	부과·환급	기타
건 수	470	270	76	69	15	13	9	4	14
구성비 (%)	100.0	57.4	16.2	14.7	3.2	2.8	1.9	0.9	2.9

- 권익위가 '08~'13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5.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로 인한 국고손실 규모도 막대한 수준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

《 권익위 신고사건 부정청구행위 주요 유형분석 》

분 야	부정청구행위 세부유형
보건/복지	▪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인원, 보육시간 조작, 시설 상시 근무자 허위 등재 등 보조금 허위·과다청구 ▪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요양병원) 진료 횟수 부풀리기, 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부대비용 과다계상

분 야	부정청구행위 세부유형
고용/ 노동	▪ 장애인·청년 허위 채용, 퇴사직원 허위등록, 출석부 조작 등 보조금 허위청구 등 ▪ 선지급한 임금 일부를 가족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등
연구/ 개발	▪ (대학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 참여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가족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등 ▪ (산업체 연구보조금 횡령) 연구개발비를 직원 인건비, 개인채무 상환 등 목적외 사용 빈발
문화/ 체육	▪ (문화예술 및 문화재 사업)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문화재 부실 보수, 관급재료 횡령 등 ▪ (체육단체) 각종 체육행사 개최하면서 선수단 숙박비·식사비를 부풀리기, 장비 구입비용 중복정산 후 횡령
산 업	▪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등) 허위 납품서 제출, 허위 라벨부착 등의 방법으로 시설운영자금, 장비구입비 편취 ▪ (지역연고사업 보상금 등) 친인척 명의 차용하여 허위기업 설립, 이전 공장부지 면적 부풀리기 방식 등으로 보상금 부당수령
교 통	▪ (도로공사 보상금) 보상담당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보상, 담당 공무원이 보상수급자 기망해 보상금 부당 편취 등 ▪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특수용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불법 용도변경,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 결제, 유사석유 구매후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2 **법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 부재**

○ 허위·부정청구 방지를 위한 종합적 관리규정 미비

- 복지관련 재정수요 증가와 선심성 예산집행 등으로 개별법령에서 환수근거를 누락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공공재정침해행위 발생시 관리상 사각지대 발생

※ 경남지역 지자체는 매월 8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환수 근거를 두지 않아 사망한 노인의 장수수당을 계속 수령하는 등의 빈발하는 부정수급 환수조치 애로('14.1월, 연합뉴스)

- 공공재정침해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문제 발생시 사후적으로 개별법령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
- 현행의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방식으로는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곤란

○ 개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제재여부·수준이 상이하여 공공재정침해행위 억제에 한계 노출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은 시설물 공사시 시행업체의 허위청구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및 환수 근거가 없어 제재조치 없이 민사소송으로 해결 ('14.6월, 권익위)

※ 저질부품 공급 등 계약 관련 부정행위시 국가·지방계약법은 입찰참가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입찰참가 제한사유에서 제외

○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 및 일관된 추진전략 없이 문제 발생시 임시방편 식으로 대응

- 개별기관의 재정누수 현황, 고의·상습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유 시스템 부재로 공공재정침해행위자가 타 공공기관에서 다시 재정 지원을 받을 우려

※ 공단은 정책자금 부실채권 발생업체 '12년도의 85.9%, '13년도 49.3%가 A기금 또는 B기금으로부터 중복지원('14.7, 국회)

《 개별법령별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현황 분석 》

관련 법령	제도 현황
국가재정법	▪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된 기본사항을 규정 ▪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환수·불이익 규정이 없음
국가채권 관리법	▪ 국가채권 회수절차 등 국가채권 관리 전반에 대하여 규정 ▪ 적용대상이 협소(중앙행정기관의 채권에 한정)하고, 부정청구등 방지장치 부재
국가계약법	▪ 부정행위를 한 계약상대방은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불이익 부과, 재정손실에 대한 환수 장치 부재 ▪ 적용대상이 국가, 지자체, 일부 공기업에 한정 ▪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공기관은 참여제한 업체정보가 미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부정 수급분에 대한 해당금액만 환수하여 부정수급 방지 실효성 미흡
R&D 관련법 복지 관련법	▪ 개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여부, 제재여부가 각각 다르게 규정 ▪ 환수여부, 제재여부가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고 구체적 절차규정이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 ※ 고용보험법 제35조는 지원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지원제한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헌결정('13.8, 2011헌바390)
부패재산 몰수법	▪ 적용대상이 뇌물죄, 횡령·배임죄 등 일부범죄에 한정되어 예산낭비 등에 대한 규율이 미비
공무원범죄 몰수법	▪ 몰수는 부가형이므로 형사처벌이 동반되지 않는 재정침해에 대한 환수 곤란

3 개별법상 통제장치의 실효성 미흡

○ 상당수 법률에 환수근거가 없거나,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여부를 재량으로 규정

※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특별법,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등은 지원근거만 있고 환수규정은 없는 상황

※ 보조금관리법,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많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

《 환수 관련 법령 분석 현황 》

(‘14년 6월 현재)

관련 법령	적용대상	환수 규정	제재 부가금	참여 제한	구체적 환수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형벌
해외농업개발협력법	해외농업개발사업	×	×	×	×	×	×
식품산업진흥법	수산물가공품 지원 자금	×	×	×	×	×	×
농어촌마을주거환경개선특별법	정비사업 지원금	×	×	×	×	×	○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특별 지원금	×	×	×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사업자 수령자	사업자:재량 수령자:의무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포상금	○
과학기술기본법	연구수행 기관	재량	5배 이내, 재량	5년 이내, 재량	제재 부가금 국세체납 처분의 예	×	×
기초연구진흥법	연구수행 기관	재량	×	5년 이내, 재량	×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 수행기관	재량	5배 이내, 의무	5년 이내, 재량	○	×	×
농촌진흥법	연구수행 기관	재량	×	5년 이내, 재량	×	×	×

관련 법령	적용대상	환수 규정	제재 부가금	참여 제한	구체적 환수절차	신고자 보호보상	형벌
고용보험법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재량	5배이내, 재량	1년이내 재량	×	포상금	×
	실업급여	재량, 연대책임	1배,재량, 감면가능	×	×	포상금	○
중소기업진흥 에관한법률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위임	×	×	×	×	×
간척지이용 관리법	간척지 활용사업	재량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	○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연구 수행자	재량	×	2년이내 재량 (일부 의무)	×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국비 유학생	재량	×	×	×	×	×
남북협력 기금법	협력기금	재량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	×
국민건강 보험법	보험급여	의무, 연대책임	×	영업정지 1년, 재량, 위반사실 공표	×	포상금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고령친화제 품 우수사업자	의무	×	×	국고금관리 법령 준용	×	×
남북피해자 의 보상법	피해 위로금	의무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	○
기상법	기상 교육· 훈련기관	의무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	×
기초노령 연금법	수급자	의무	×	×	국세징수 예에 따름	○	○

○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 절차, 미납시 강제수단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집행이 곤란한 경우 다수

《 환수 절차 미흡 현황 》

처리절차상 흠결	문제점	실태 사례
납부지연에 따른 제재 미비	환수 지연	평가원은 '09~'11년까지 미납한 환수금 427건 중 74%인 313건이 7개월 이상 납부 기한 초과
미납시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절차 결여	소송 등에 따른 환수지연, 별도 추가비용 발생	공공기관은 품질서류를 위조하여 불량부품을 공급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실금액 9억2천6백여만원 환수여부 불투명 공공기관은 채권추심 위임 수입료로 '12년과 '13년에 약 2억5천만원 사용
미납 결손처분에 대한 추적·관리규정 불명확	소멸시효전 임의로 미납금 회수 종료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09년부터 '11년까지 약 49억여원 미납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임의로 면제처리
제3자에게 양도된 부당이익 환수근거 부재	부당이익 은닉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급 대가로 받은 뇌물로 원룸 건축후 브로커 명의로 등기
허위·부정청구 인지도 지원보류 제도 결여	위반 최종확정시까지 지속지원, 재산은닉	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여도 수사 종료시점까지 진료비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어 수사기간 중 재산은닉으로 인하여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1,960억 중 실제 징수액은 178억원(9%)에 불과

4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장치 미비

- 기존 부패방지 대책은 공직자들의 부패에 중점을 두고, 민간의 허위·부정청구 등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소홀

※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10년 국가공무원법에 도입)

※ 편취·절취·배임행위 추가, 금품·공금 외에 물품에 대한 것도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 작업 중(안전행정부)

- 최근, 일부 법령에서 허위·부정청구한 금액의 일정 배수를 징벌적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해당분야에만 적용

※ 현재 12개 법령에서 부정청구 금액의 수배 규모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그 중 7개 법령은 최대 5배 이내에서 부과토록 규정

《 개별법상 제재부가금 제도 도입현황 》

법령	사유	징벌 환수금액	부과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의무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재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연구개발비 용도외 사용	5배 이하 제재부가금	재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수대금 부정미납 시	5배 이내 부가금 징수	재량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지원·용자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재량
고용보험법	지원·용자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재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장려금 부정수령	5배 이하 추가징수	의무
주차장법	주차장 목적외 사용 등	4배 이내 가산	재량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 직불금 부정등록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정등록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료비·약제비 부당수령	2배(확정) 추가 징수	의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간외 수당 등 부당수령	2배(확정) 가산징수	의무

- 한편, 최근에 도입된 징벌적 환수제도에서 징벌적 환수 여부가 임의사항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운영실적 저조
 - ○○기관은 제재부가금이 도입된 '12년 이후 관리과제에서 66건의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었으나, 제재부가금 부과는 0건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제재부과금을 의무적 부과토록 개정 ('14.5월)
 - 악의적·상습적 부정청구 행위자도 단순 환수조치에 그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 만연
- 상습 허위·부정청구자에 대한 명단공개, 관허사업 참여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불이익 장치 미비

《 개별 법령별 제재수단 현황 》

구분	보조금 (보조금 관리법)	연구 개발비 (산업기술혁 신촉진법)	조세채권 (국세징수법, 관세법)	과태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국가채권 (국가채권 관리법)
제재부가금	X	○	X	X	X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X	X	○	○	○
금융자산 조회	X	X	○	X	X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X	X	○	X	X
출국규제	X	X	○	X	X
포상금 지급	○	○	○	X	○
관허사업제한	X	○	○	○	X
기 타	형벌	-	-	감치	담보제공 요구

5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리 빈발

-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되고, 각종 예외규정 등 제도상 허점으로 제재의 확행이 미흡한 상황

《 허위·부정청구 제재 미확행 사례 》

기관	허위·부정청구 행태	제재 사항	사유
A기관	413억6천여만원이 지원된 748건 연구과제의 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미환수 (413억6천여만원)	환수근거 규정 없음
B기관	1억7천만원을 지원한 연구개발 사업이 미흡(불성실 실패) 평가	연구비 미환수 (1억7천만원)	환수여부가 재량규정
C기관	시험성적서 위조	입찰참여 제한 미조치 (이후 고속철도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	관련규정 없음
D기관	품질검증 서류 위변조	입찰참가 제한했으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3건 (534,989천원) 계약 체결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

- 저조한 사업 성과(부진한 집행실적, 낮은 등급의 성과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이해관계, 단체장과의 친분** 등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이 계속되는 사례도 발생

※ 경기 지역 지자체 협의회는 신청한 보조사업이 '11년, '12년 연속 부정 평가를 받고 '13년 사업 실적이 없었으나, 매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어 3년간 5천6백만원의 보조금 지원

※ 경기 지역 지자체 산하기관에 2천만원을 지원했으나 활동부진으로 19,960천원을 반납했음에도, 지원중단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 없이 이듬해 같은 금액을 지원

- 공공기관들은 인력부족, 집행곤란 등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환수에 소극적인 경향
- 전체 지원 건수 중 증빙자료 진위여부 파악, 현장실사 등 정밀 정산 비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은 정산업무 위탁
 - ※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5% 미만의 연구과제만 직접 정밀정산을 수행하고, 나머지는 현장실사 권한이 없는 회계법인에 정산업무 위탁('14.5월, 권익위)
- 중간 정산시 유용 사실 등을 발견하고도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하다, 해당 기업 폐업으로 인한 출연금 전액 손실한 경우도 발생
 - ※ ○○기관은 과제 수행기관이 회계서류 불완전 제출, 사업비 일시유용(8천만원) 등을 인지했으나,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연구 수행기관이 경영악화로 폐업 처리되어 과제가 중단되었으나, 성실중단으로 처리되어 출연금(11억3천여만원) 전액 손실('14.6월, 권익위)
- 정산 미흡 등 부실한 사후관리는 지원예산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교부 목적 외로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 초래
 - ※ ○○공단은 매년 4,000건 이상 지원되는 시설자금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어 공장시설 매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음식점 운영, 임대사업 등 용도외 사용되는 사례 발생('14.5월, 권익위)

《 주요 공공기관의 손실금액과 환수 현황 》

- (건강보험) 최근 5년간 부당건강검진기관은 2,442개, 부당청구액은 19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액 27.5%에 불과한 53억여원에 그침**(’13년 국정감사)

《 부당건강검진기관 환수 현황 》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적발기관수	적발건수	환수결정액	징수금액	미징수금액	징수율
2011	767	480,391	14,961,278	2,413,773	12,547,502	16.1%
2012	1,034	379,351	2,948,066	1,814,939	1,133,127	61.6%
2013.8	641	238,099	1,415,063	1,089,092	325,971	77.0%
합계	2,442	1,097,841	19,324,407	5,317,804	14,006,600	27.5%

- (OO 정책자금) 최근 3년간 발생한 5천800여억원의 부실채권 중 **27%인 1천500여억원만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공단의 손실금액을 매년 예산으로 보전(’14.5월, 권익위)

* 손실보전금액 : (’11년) 300억원 → (’12년) 285억원 → (’13년) 500억원

《 공단 정책자금 부실채권 현황 》

구분	약정해지금액	회수금액	회수율	상각현황
’11년	169,558백만원	51,780백만원	30.6%	64,952백만원
’12년	208,179백만원	48,959백만원	23.5%	104,651백만원
’13년	203,182백만원	53,912백만원	26.5%	104,103백만원

- (연구개발비) ○○기관은 연구과제 가운데 최근 3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발생한 금액이 212여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120여억원(56.5%)이 미환수**(’14.6월, 권익위)

《 연구비 부정사용 및 환수 현황 》

구분	부정사용 금액	환수 금액	미환수 금액	환수율
’11년	2,237,470천원	1,604,214천원	633,256천원	71.7%
’12년	5,367,844천원	1,669,407천원	3,698,437천원	31.1%
’13년	13,660,246천원	5,967,484천원	7,692,762천원	43.7%

6 은밀화·고도화 되는 부정청구 행위 적발 곤란

- 공공재정 침해행위는 가담자 상호간 이익이 합치된 윈윈구조(win-win)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에서 비위사실 인지 곤란
 - ※ 각종 시설 설치자금 보조 관련하여 설비업자가 자부담금을 대납해주고 가격을 부풀린 불량제품을 공급한 후 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
 - ※ 장려금 부정수급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이 곤란하여 매년 공단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나 적발률은 1% 미만('14.5월, 권익위)
- 은밀하고 조직적인 부패담합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내부신고가 필수적이거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
 - 대부분 법령에는 공공기관 수입회복 또는 비용 절감 등의 금액에 비례하여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미비
 - 보조금법 등 일부 법률상 포상금 제도는 적발된 재정누수 규모에 관계없이 예산범위 내에서 소액지급으로 신고 활성화 한계
 - ※ ○○기관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 저조('14.5월, 권익위) : ('11년) 3명 → ('12년) 3명 → ('13년) 3명
 - ※ ○○기관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불법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09년 이후 신고는 5건에 불과('14.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도 전무한 상황

Ⅲ

법제화 주요 내용 : 총 3장 26조

제 명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목 적	허위·부정한 청구등을 금지하고,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함으로써 공공재정의 낭비방지 및 투명성 제고		
적 용 대 상	▶ 공공기관 : 모든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공공재정 :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행정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 또는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금전 또는 재산 ▶ 부정청구등 : 과다·허위 청구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부정청구 금지 등	부정청구등 금지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	부과·징수 절차
	▶ 부정청구등 금지(제6조) ▶ 시정조치(제7조)	▶ 부정이익 환수(제8조) ▶ 제재부가금 부과(제9조) ▶ 제재부가금 감면(제10조) ▶ 최소금액 등 적용배제(제11조) ▶ 손해배상 책임(제19조)	▶ 징수절차(제12조) ▶ 납부의무 승계(제13조) ▶ 조사실시(제14조) ▶ 이의신청(제16조) ▶ 시효(제17조) ▶ 결산처분(제18조)
실효성 확보장치	▶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제15조) ▶ 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제20조) ▶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제21조) ▶ 명단 공표(제22조)		
신고자 보호·보상	▶ 부정청구등 신고(제23조) ▶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24조, 제25조) ▶ 과태료 및 형벌 부과(제26조)		

1. 제정 목적(제1조)

- 공공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허위·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2. 적용대상 기관(제2조제1호) : 모든 공공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감사원·국가인권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905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303개)
- 각급 국립·공립 학교

3. 적용 대상 공공재정의 범위(제2조제4호)

-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 또는 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

※ 공공재정의 범위(예시)

-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예산, 기금 또는 보조금, 국고금, 보관금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재산, 물품
-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
-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분담금·기여금 등

4. 적용대상자(제2조제2호, 제3호, 제5호)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수익자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보조금·출자금·출연금·급부금의 **수수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 **납부관계** 등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와 관련되는 상대방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행정권한을 갖는 처분권자를 지칭하는 의미로서 ‘행정청’ 용어 사용
 -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행정청에 해당

국내 입법사례

< 행정절차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 행정소송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는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5. 적용배제(제4조)

- (조세채권) 국세징수법, 관세법 등에 따라 관리법규와 체계가 잘 정비된 국세·지방세·관세 제외
- (벌금류 채권) 형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벌금·과료, 몰수·추징, 단순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채권과 구분되는 형벌적 성격을 가진 과태료 제외

국내·외 입법사례

< 국가채권 관리법 >

제3조(적용 제외 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36조와 제37조를 적용한다.

1. 벌금, 과료(科料), 형사추징금, 과태료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2. 증권으로 되어 있는 채권
3. 국가의 예금 및 예탁금에 관한 채권
4. 보관금(保管金)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5. 기부금에 관한 채권
6. 국세 및 관세와 이의 징수에 관련된 채권

< 미국 캘리포니아 부정청구금지법 > 제12651조 ㉔,㉕

- 500달러 이하 분쟁, 세입 및 조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청구 등에는 적용 배제

6. 타법과의 관계(제5조)

-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법적 성격 명확화

1.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제7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부정청구등”이란 수익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다.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작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이 소요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익자등에게 금지되는 부정청구등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사전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부정청구등 중지 등 조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2. 해당 공공재정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제정 내용

1 부정청구등 금지(안 제2조제6호, 제6조)

○ 누구든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금지

○ 부정청구등의 유형(안 제2조제6호 각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가목)

< 무자격자 청구 (예시) >

- ▶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중소기업창업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
- ▶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을 부당 수령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나목)

< 허위·과다 청구 (예시) >

- ▶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구비나 부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등록
- ▶ 실제 보육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
- ▶ 군용유류 구매계약시 정유사들이 허위계산서로 비용을 과다청구하는 행위
- ▶ 보상담당 공무원과 결탁하여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보상대상 건축물을 과다 보상금 수령

-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다목)

< 채무면탈 (예시) >

- ▶ 화훼육성 시범단지 육성자로 선정된 자가 생산단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기부담없이 부품단가 및 수량,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라목)**

< 목적외 사용 (예시) >

- ▶ 연구개발비를 회사 채무 상환, 차량구입 등 개인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 ▶ 공장신축 용도로 지원된 정책자금으로 음식점 영업, 임대영업 등을 하는 경우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마목)**

< 계약 관련 부정행위(예시) >

-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있는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횡령

-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바목)**

< 부당이득 (예시) >

- ▶ 고의·과실없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 지급받은 경우

② 부정청구등에 대한 중지 등 조치

- (시정조치 요건) 부정청구등의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정청구로 볼 상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환수처분 이전에 지급 중단을 할 법적인 근거 없는 경우 지급 후 환수에 애로
- (시정조치 사항) 행정청은 수익자등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 해당 공공재정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 그 밖에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그 밖의 참고사항

□ 외국의 허위·부정 청구 관련 입법 현황

구 분	주요 법률
미 국	○ 연방 부정청구금지법 : 정부계약이나 재정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 환수 -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32개 주에 부정청구금지법 제정 ○ 사기행위 단속 및 환수법(2009) :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선물 및 금융사기행위까지 허위·부정 청구 범위를 확대하고 환수 및 규제를 강화 ○ 부정지출 금지 및 환수 촉진법(2012) : 부정지출 통제 목적 - 부정지출 위험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부정지출 환수 및 방지를 위한 반기·분기별 조치계획 수립 - 총괄기관은 부정지출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제공 - 각 기관은 집행과정에서 부정지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정당업자 명부, 사회보장국 사망자 명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지출을 예방 - 이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 ○ 형법상 부정청구금지(18 USC §285~§287) : 서류조작, 공모, 청구서 제출 등 허위청구 관련 행위에 대해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병과 가능) ○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금지 및 부정청구 환수 규정(42 USC §1320a-7) : 의료제도 관련 범죄로 유죄선고를 받거나 허위·부정 청구로 의료보험 지급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연방 의료보험제도 가입·참여를 배제 - 장관이 부정청구에 따른 민사벌금 및 손해배상금액을 ‘재판외의 화해’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영 국	○ 사기행위방지법(The Fraud Act 2006) : 사기행위를 ▲허위표시·진술에 의한 사기행위, ▲정보 미공개에 의한 사기행위, ▲지위·권한의 남용에 의한 사기행위로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이나 형사처벌하며 재산상 이득금을 환수 ○ 범죄수익 환수법률(Proceeds of Crime Act 2002) :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환수청’을 설치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환수

2. 부정청구등에 대한 제재(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제19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제8조(부정이익 환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으로 행정청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등이 얻은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 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하거나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환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함에 있어 공공재정이 이미 수익자등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 또는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해당 수익자등이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부정청구등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2배

2.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3배

3.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수인의 공동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① 행정청이 제9조에 따라 수익자등을 상대로 행정상의 조치를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면제한다.

②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익자등이 당해 부정청구등과 관련하

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한 후에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최소금액 등 적용배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3.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환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의 피해규모
3.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등
6.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가. 제정 내용

< 환수 체계 >

◆ 모든 공공재정침해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으로서 **부정이익을 반환**

◆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부과**(2배, 3배, 5배)

◆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동일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5배 이내)

⇒ 허위·부정청구, 부정지출 등이 발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환수 조치를 시행

① 원상회복으로서 부정이익 환수(안 제2조제7호, 제8조)

- (부정이익)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얻은 금전이나 재산
- (환수의무)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익자등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 또는 민사상 조치 의무 규정
 - 공공재정이 이미 수익자등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전부 또는 취소
- (환수권자)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으로 행정청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행정청에서 환수처분
- (환수범위) 수익자등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 처분
 - 개별 법률에서 부정청구등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법을 적용하도록 일반적인 환수근거 마련
 - 다만, 부정청구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하거나 변상금(사용료나 대부료의 120%)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환수로 간주

② 제재부가금 부과(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가. 제재부가금 부과권자 : 소관 행정청에서 부과

- 행정권한의 일부 위임·위탁이 가능하므로 부정이익 환수권자와 제재부가금 부과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
- 행정청이 아닌 공공기관은 민사소송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정이익 환수나 제재부가금 처분을 할 수 없음

< 개별법상 부정이익 환수권자와 제재부가금 부과권자 >

법령	환수권자 (위임·위탁받은 자)	제재부가금 부과권자 (위임·위탁받은 자)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청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과학기술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14.11.28. 시행 예정)	좌 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지자체,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	좌 동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	좌 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좌 동
주차장법	노상주차장관리자 ※ 지자체 장,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좌 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5.1.1. 시행)	좌 동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좌 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 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	좌 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	좌 동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각 행정기관의 장	좌 동

나. 제재부가금 부과 기준

- (부과사유) 6개 부정청구등 유형 중 거짓 청구 등에 따라 부정 청구등이 발생한 4개 사유로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용자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 (부과금액)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액을 부과(1배)**
-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전력 횟수**에 따라 **2~5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 **2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 : **3배**
 - 제재부가금 처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5배**

다. 제재부가금 감면

- (면제) 민사·형사 또는 행정상의 조치가 개시되기 이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 이익금 모두를 상환한 경우
- (감면)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을 당하거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라. 제재부가금 적용 제외

- 허위·부정 청구 또는 부정지출로 인한 손해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 부정행위별로 부정이익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익 환수 처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제외 여부 판단

※ 캘리포니아주 부정청구금지법은 500달러 이하의 허위·부정 청구는 적용 배제

○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지원되는 급여 금품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미국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 Act)은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득보조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환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 위임)

③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안 제19조)

- (적용 범위) 계약 등과 같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발생하는 부정청구 등은 공공기관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 (위반 행위) 공공재정을 목적 외로 사용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가한 경우로 제한
- (과실 책임) 수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
-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부과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시 **법원의 판단기준**을 구체적 명시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재정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법례 : 3개 법령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술탈취 등의 경우 **3배 범위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반복되는 경우 **3배 범위내**

나. 그 밖의 참고사항

□ 제재부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 비교

구분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분야	공권력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보조금, 출자·출연금,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급부금등	공공기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
위반행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공공재정의 목적외 사용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 공공재정의 목적외 사용
부과/청구자	행정청 이 직접 부과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사인 포함)	공공기관이 법원 에 청구
환수범위	기본 : 부정이익금 상당액(1배) 가중 : 전력에 따라 2~5배	2배 이상 5배 이하 범위 이내
소송방식	행정소송	민사소송
강제집행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	민사법에 따른 강제집행

□ 국내·외 입법사례

○ 제재부가금

국내·외 입법사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 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 ②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한다.**

< 미국 연방 부정청구금지법 > 제3729조

- 허위·부정 청구로 인하여 연방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에 추가하여 5천~1만 불 민사벌금 병과

○ 제재부가금 감면

국내·외 입법사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31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추가 징수에 있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유용(流用)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미국 연방 부정청구금지법 > 제3729조

- 위반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출하고 연방정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경우 배상액을 **3배에서 2배로 감경**

○ 징벌적 손해배상제

국내 입법사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액은 차별적 처우로 인

하여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절차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의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정해진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의 환수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안에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상속·합병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정이의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부정이의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시 부정이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조사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은 부정이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직자로 하여금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직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정이의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부정이익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등)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5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시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부정이익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가. 제정 내용

① 제재부가금 등 부과·징수절차(안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부과)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되,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대통령령 위임사항(예시)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오납금 환급 등

- (가산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가산금 징수
 -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산금 징수기간을 60개월로 제한
- (징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불복) 제재부가금등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가능
- 그 밖에 결손처분, 시효에 관한 규정 마련

구분	세부 내용
결손처분	○ 체납자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달하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환수 효율성 제고 - 결손처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 소멸시효 기간(5년) 동안 추적징수를 하고 재산 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실시
소멸시효	○ 부정청구등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

② 연대책임 및 납부의무 승계(안 제9조제3항, 제13조)

-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하여 제재부가금 대상인 부정청구등에 관여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제재부가금 상환의무 부과
- (납부의무 승계) 부패수익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은닉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 제재부가금등이 상속·양도 등이 된 경우 상속인·양수인 등 으로부터 부정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시 납부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

③ 부정청구등 조사(안 제14조) :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 (자료제출 요구 등)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익자등, 부정청구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사업장 조사)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재정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
- (과세자료 등 요청)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시 관할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 등기소 기타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등사 또는 등·초본의 교부 청구 가능

나.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내·외 입법사례

○ 연대납부의무

국내·외 입법사례

< 국민건강보험법 >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 ④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게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미국 캘리포니아 부정청구금지법 > 제12651조

두 명 이상의 사람에 의하여 허위·부당청구가 행해진 경우 **연대책임 부과**

○ 사업장 조사, 과세 정보제공 등

국내 입법사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4. 부정청구등 방지 실효성 확보장치(안 제15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제15조(참여제한 등)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수익자등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에 그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의 참여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참여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자등에게 그 참여제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기간, 그 밖에 참여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에 대해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의 방지제도 등에 대한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및 조사·점검의 결과 이 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은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방지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명단 공표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금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제재부가금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
- ③ 제1항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방법·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제정 내용

①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제한(안 제15조)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 참여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타 공공기관에 참여제한 사실을 통지하고 기록·관리
-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 참여를 2년 내에서 제한
-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② 제재부가금 등 기록 관리(안 제20조)

- (공공기관) 시정조치, 제재부가금 등 부과시 권익위에 자료 제출
 -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 손해배상청구 현황 기록·관리

③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안 제21조)

- (권익위) 각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정 누수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를 위해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 위반자에 대한 정보,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공기관간 공유하여 유사한 부패발생을 차단

- 효율적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 권익위 및 공공기관의 역할 》

권익위	공공기관
▶ 재정누수 부패 근절 정책수립 총괄 ▶ 환수현황 등 정보 수집·관리 ▶ 빈발분야 등에 대한 제도개선 ▶ 부정청구등 방지제도 이행실태 점검 ▶ 환수 관련 정보 등 공개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재정누수에 대한 환수 등 조치 ▶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제재부가금등 부과·징수사항 기록·관리 ▶ 환수현황 등 정보 제출

④ 명단 공표(안 제22조)

- (대상)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불복절차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되나, 불복절차 종료 후 취소되지 않고, 불복하지 않았으면 명단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추가 공개

- (공표기관) 제재부가금 등 처분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조사 점검을 통해 부정청구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명의로 공표

- (심의위원회)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

- (방법·절차 등) 명단 공표 방법·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⑤ 범죄혐의 있는 부정청구등행위자 수사기관 통보 의무화(안 제8조 제4항)

-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공문서위조,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등)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의무화

나. 그 밖의 참고사항

□ 국내 입법사례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내·외 입법사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계약상대자등"이라 한다)나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인 해당 계약상대자등에게 제27조제1항에 따라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등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등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7.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

- 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 영 제42조제7항에 따른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제43조제8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17.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명단공표

국내·외 입법사례

< 영유아보육법 >

제49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및 그 밖에 다른 어린이집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2. 제24조에 따른 운영기준 및 제3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 건설산업기본법 > : 시행일 : '14.11.15.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2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횟수를 1회로 본다)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

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체불건설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상습체불건설업자의 사망, 실종선고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 2.~4. (생략)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

제23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24조(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23조에 따른 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제25조(신고자 보상)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에 대해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2.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26조(준용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제정 내용

① 신고자 및 신고기관(안 제23조, 제26조)

-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 가능

-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권익위가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조사기관에 이첩
 - ※ 권익위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수
준의 신고내용 확인 기능을 부여
- 권익위는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증거자료 제출 등과 함께 재조사 요구
 -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안 제26조) : 신고의 방법(제58조), 신고의 처리
(제59조), 조사결과의 처리(제60조)

② 내부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 강구(안 제24조, 제26조)

- 허위·부정 청구의 신고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철저한 신고자 보호시스템 마련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안 제26조) : 신분보장(제62조), 신변보호(제64조),
책임감면(제66조)

③ 신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안 제53조, 제26조)

-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특히, 징벌 환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므로 기존 보상제도
보다 인센티브가 늘어나 신고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포상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안 제26조) : 포상 및 보상(제68조), 보상금 지급결정 절차 (제70조), 중복 청구 금지(제71조)

4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안 제26조)

- 형벌규정, 과태료 부과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따른 이중처벌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화(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 위반행위별 제재 현황 》

구분	위 반 행 위	처벌
형벌	▶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	3년·1천
	▶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한 조치요구 불이행	1년·1천
과태료	▶ 신고자에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1천만원
	▶ 신고자 보호를 위한 자료제출,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1천만원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 이외 불이익 조치한 자	1천만원

나. 그 밖의 참고사항

□ 해외 입법사례

해외 입법사례

< 미국 부정청구금지법 >

- 국민은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대신해 부정청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소송제기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등 보호조치
- 소송제기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금 지급

IV

법률 제정의 기대효과

- 전형적 부패행위 중 하나인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905개)등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02년부터 예산낭비와 관련한 부패신고를 받아 처리
 - 부패방지 전담 기구로서 허위·부정청구를 통한 공공재정 낭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확보
- 일반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수체계 확립
 -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 및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환수·징수가 가능하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제거
 -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재정누수 현상에 대해 입법기술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개별법 개정 중심의 관리방식 한계를 극복
-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적극적 억제장치인 징벌적 환수의 표준적 적용
 - 부정이익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로 허위·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도덕적 해이 차단
 - ※ 미국 : 부정청구금지법(1986년)을 통해 정부 손해의 3배를 환수하고 있으며, '12년 4,959백만달러(한화 약 5조2천억원)을 환수시킴
 -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개별 법령상 제재수단상이 등으로 인한 온정적 처리 관행 개선
-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다양한 실효성 확보장치 강구
 -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 제한, 상습 범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 근거 마련

- 허위·부정청구 관련 제재 현황 등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재정누수 유형, 빈발 분야 파악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주요 위반사례 등을 공공기관간 공유하여 유사한 부패발생을 사전에 차단

□ 허위·부정청구의 효과적 차단을 위한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구축

- 은밀화·고도화 되고 있는 허위·부정청구 적발을 위해 철저한 신고자 보호와 고액의 보상금(최대 20억원) 지급이 가능
- 신고자 보호·보상 체계 확립으로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경우 공무원 인력 부족 등의 문제도 보완 가능

- '08년부터 '13년까지 6년간 부패행위로 이첩한 보조금 관련 사건 중 복지·고용(27.9%), 연구개발(19.4%), 농수축산(18.2%) 순으로 빈발

《 보조금 분야별 부패(이첩)사건 현황 》

(단위 : 건, %)

구분	합계	복지·고용	연구개발	농수축산	문화체육	산업	교통	기타
총합계	247	69	48	45	23	16	13	33
구성비(%)	100.0	27.9	19.4	18.2	9.3	6.5	5.3	13.4

① 보건·복지 분야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인원과 보육시간 및 종사자 등을 허위 등재 빈발
 - 실제 보육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 또는 시설 상근근무자를 허위로 등재 보조금을 횡령

— <사 례> —

- ▶ 보육시설원장이 보육을 받지 않은 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하거나 퇴소한 원생을 퇴소처리하지 않으면서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을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1억 원 횡령
- ▶ 아동센터는 자신의 처를 상근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교육교사 등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수천만 원 편취

- (장애인·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등) 부대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 서류 작성 빈발

- 요양병원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진료 횟수 부풀리기, 자가 요양사 시간 외 허위 등재 수법 등
-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매출서류를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 <사 례> —

- ▶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 원 편취
- ▶ 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 ▶ 사회단체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해준 식대와 유류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2 고용·노동 분야

- 청·장년 인턴사업을 악용해 인턴 사원으로 허위 채용하거나 퇴사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편취
-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급여내역을 부풀리고, 참여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급여 일부를 임의 공제 후 지급

— <사 례> —

- ▶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 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 5백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 ▶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억 원을 편취
- ▶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센터 소속 요양사들의 급여내역을 허위로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수천만 원 편취

③ 연구개발 분야

○ (대학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연구과정에 참여한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 연구원의 통장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 횡령 및 연구원 허위 등록하는 수법
- 연구 과제 편법 수행 및 허위 정산 등

<사 례>

- ▶ 국립대 조교수는 지자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지원금 횡령
- ▶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 ▶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 (산업체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인건비·경비 등으로 허위 지출 및 계약 빈발

- 보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구에 수행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충당한 후 허위 정산
-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사 례>

- ▶ 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전차엔진을 개발하는 자가 자기 회사에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하여 29억 원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42억 원 편취

-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 원 횡령
-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 원 횡령

4 농·어업 분야

○ (농·축산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농업시설 공사대금 과다 계상, 허위서류 작성·제출 등

- 공사업체와 공모해 각종 농업시설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단가 및 수량 등을 부풀려 보조금 편취
- 구제역 예방 살처분 등 긴급히 시행되는 특정 보상금 지급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원부 및 농장일보 등을 조작하는 수법

<사 례>

- ▶ 화훼육성 시범단지 육성자로 선정된 자가 생산단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기부담 없이 부품단가 및 수량,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관할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 부당 수령
- ▶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 원 상당 편취

○ (임·어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자재 등 원재료 허위구입, 자부담부분 허위 정산, 면세유 편취 등

— <사 례> —

- ▶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불량 표고목을 저가로 납품받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편취
- ▶ 약용시설 가공업자가 보조금 및 자부담 등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 원 상당을 편취
- ▶ 어촌계장 및 계원 등이 어촌계장 날인만으로 조업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0,000리터의 보조금을 횡령
- ▶ 어촌계장이 대형교량 건설과 관련한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

5 문화·체육 분야

- (청소년 시설·공예공방 등 사업운영자) 위탁 및 보조 사업자 등이 공사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횡령
- (문화 예술 및 문화재 사업)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및 사찰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의 허위 공사와 정산 등 수법
-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사비 및 출전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후 횡령

— <사 례> —

- ▶ 공예공방 사업 수행자가 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보조금을 편취
- ▶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 원 횡령
- ▶ 시의 문화재 전승 보조금을 총괄하는 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회원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횡령
- ▶ 체육회 전무로 있는 자가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숙박비, 식비, 출전비 등으로 부풀려 약 1,200만 원 횡령

6 산업 분야

-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등) 허위 납품서 제출,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시설운영자금, 장비구입비 편취
- (지역연고사업 보상금 등) 허위 기업 설립, 사업계획 서류 조작 등의 방식으로 지역연고사업,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보상금 편취 등

<사 례 >

- ▶ 청으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 원 편취
- ▶ 공단의 클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장비에 허위 사양레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약 6억 원 편취
- ▶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 5천만 원 횡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 원 편취

7 교통 분야

- (도로공사 과정에서 과다보상 등) 보상업무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보상 받거나, 보상수급자를 기망해 보상금 일부 편취
-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편취) 특수용 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용도변경하거나 등록서 위조 및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돌려받는 수법

— <사 례> —

- ▶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 ▶ 군청 직원이 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상금 수급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의 절반을 편취
-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 원을 편취
-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재를 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천만 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실손해배상 이외에 징벌적 의미의 추가적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은 주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도입·운영 중이며, 일본,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도입하지 않고 있음
- (도입 찬반론) 대륙법계 민사법제를 계수한 우리나라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여부에 대한 이견 발생
 - (찬성) ① 피해자의 제소 촉진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적집행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수행, ②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이 되더라도 가해자에 적정한 징계가 못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 손해배상으로도 구제에 불충분한 경우가 발생, ③ 손해배상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벌금이나 과징금과 성격이 다름
 - (반대) ① 헌법상 보호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실손배상 원칙에 위배, ② 거액의 배상금을 기대한 남소 우려, ③ 과중한 배상액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
- (도입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점차 증가추세
 - * 하도급법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 기간제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

참 고 3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 1986)

□ 민간이 정부계약이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제도

※ 미국의 부정청구금지법(The Federal False Claims Act, 1863년)은 링컨대통령이 남북전쟁 당시에 연방보급품 구매과정에서의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만연하자 이를 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여 '링컨법(Lincoln Law)'으로 알려져 있음

< False Claim Act에 의한 국고환수금 >

(단위 : 건, 백만달러)

연 도	1987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리건수	373	458	495	541	565	715	762	782
- QUI TAM	30	363	365	379	433	575	638	647
- NON QUI TAM	343	95	130	162	132	140	124	135
환수금액	86	1,577	1,971	1,364	2,460	3,064	3,056	4,959
- QUI TAM	0	1,210	1,406	1,045	1,991	2,425	2,815	3,354
- NON QUI TAM	86	367	565	319	469	639	241	1,605
보상금액	0	184	197	202	259	391	558	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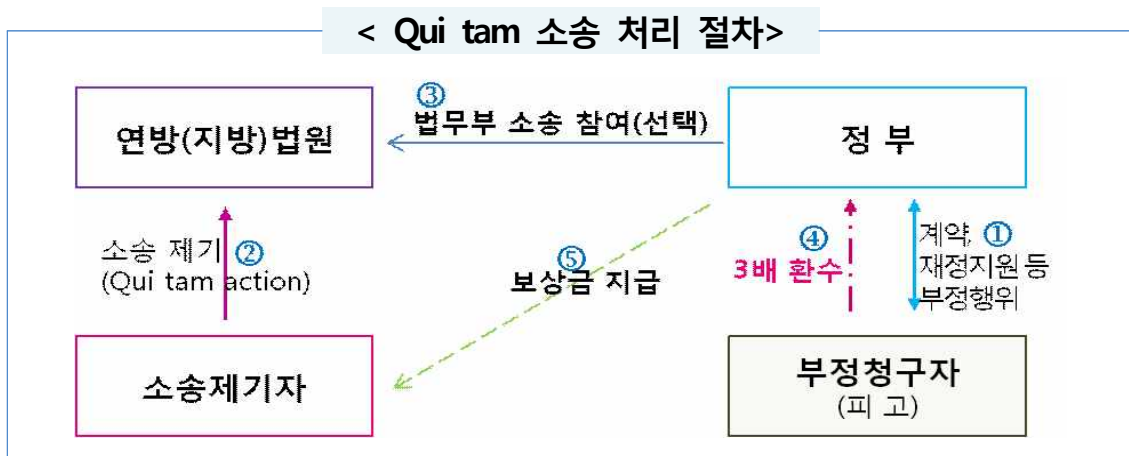
□ (적용대상)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를 통해 재정적 손실을 끼친 행위

- 고의로 정부에 허위 또는 부정한 예산지출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해 허위 기록이나 진술하는 행위, 다른 사람과 공모하는 행위
-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이나 이전해야 하는 재산을 피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부정한 기록이나 진술을 하는 행위 등

□ (소송절차) 법무부장관 또는 국민은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 법무부장관은 부정청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구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 가능
- 국민(소송제기자)은 부정청구에 대해 정부를 대신하여 정부의 이름으로 법원에 소송(Qui tam action) 제기 가능

* Qui tam :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라틴어에서 유래)



* 국민이 제기한 소송(Qui tam action)에 법무부가 소송참여를 결정(지방정부 예산이 포함된 경우 지방정부도 참여 가능)하여 공동소송 형태로도 진행

□ (배상금) 정부는 부정청구자에게 손해액의 3배를 징벌 환수, 5천~1만불의 민사벌금을 병과

- 부정행위 관련 정보 제공,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 징벌배상금액 감액(3배→2배)

□ (보호·보상) 소송제기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제도 운영

- 소송제기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한 복직,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의 회복 등 보호조치
- 소송제기자에게는 환수액의 15~30%의 신고 보상금 지급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허위·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정이익에 대해서는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낭비 방지 및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5. “수익자등”이란 공공기관과의 계약관계(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보조금·출자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급부금의 수수관계,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납부관계, 그 밖의 공공재정의 수입·지출·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재정을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를 말한다.

6. “부정청구등”이란 수익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공재정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 또는 수량보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다. 법령·조례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부담금·기여금 등의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과 관련한 채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탈하는 행위

라.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부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공공재정을 지급받거나 사용·수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얻은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구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배제) 이 법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租稅)의 부과·징수와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명단 공표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① 누구든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재정이 소요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수익자등에게 금지되는 부정청구등의 내용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사전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부정청구등 중지 등 조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해당 부정청구등의 중지
2. 해당 공공재정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정이익 환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으로 행정청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등이 얻은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환수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하거나 변

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환수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함에 있어 공공재정이 이미 수익자등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이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얻은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 또는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해당수익자등이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같은 부정청구등으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2배
2.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3배
3.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정청구

등으로 인한 부정이익 금액의 5배

③ 제1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수인의 공동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① 행정청이 제9조에 따라 수익자등을 상대로 행정상의 조치를 개시하기 이전에 수익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면제한다.

② 행정청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수익자등이 당해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한 후에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최소금액 등 적용배제)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에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3.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환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가산금 및 채납처분) ①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처분을 받거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정해진 기한 다음 날부터 부정이익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52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행정청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및 제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안에 반환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상속·합병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부정이익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부정이익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의무 승계와 관련하여서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조사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익자등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정청구등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직자로 하여금 수익자등의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시설·장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직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부정이익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공공기관은 부정이익 반환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그 밖의 관계 공공기관에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참여제한 등) ① 행정청은 수익자등에 대한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수익자등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청은 다른 공공기관에 그 참여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청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사업의 참여를 2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참여제한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자등에게 그 참여제한 사실 등을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의 기간, 그 밖에 참여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이의신청 등)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5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7조(시효)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부정이익 반환명령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8조(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책임) ① 「민법」 제39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재정과 관련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등이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기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수익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공공재정의 피해규모
3. 부정청구등으로 인하여 수익자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부정청구등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부정청구등의 기간·횟수 등
6. 수익자등의 재산상태

제20조(제재부가금 등 기록·관리)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에 대해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구등의 방지를 위해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시정조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제한 처분, 결손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정청구등의 방지제도 등에 대한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을 위해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관리 및 조

사·점검의 결과 이 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이나 그 감독기관은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정청구등의 방지 및 부정청구등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명단 공표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 중 부정이익 금액이 합계 3천만원 이상인 자(이하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처분은 제외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
2. 제재부가금 처분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에 해당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자에게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습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방법·절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제23조(부정청구등의 신고)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을 소관하는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24조(신고자 보호)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23조에 따른 신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제25조(신고자 보상) 제2조제6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에 대해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2.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3.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

제26조(준용규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및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71조까지,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한다.



토론

» 장 영 수(고려대 교수) • 77

» 박 정 수(이화여대 교수) • 87

» 송 준 호(흥사단 투명사회본부 공동대표) • 95

» 김 동 섭(조선일보 기자, 전 논설위원) • 101

» 박 노 욱(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장) • 107

» 이 명 선(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장) • 111

» 최 두 선(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 113

**공공재정의 성격과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 고려대 장 영 수 교수

공공재정의 성격과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고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영수(헌법학)

《차 례》

I. 서: 입법취지의 정당성과 제도적 장치의 적절성

II. 공공재정의 개념 및 성격

1. 입법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의 설정
2. 공공재정의 개념과 법안에 따른 범위 설정의 적정성
3. 공공재정의 성격과 공공재정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III. 법안에 따른 부정이익의 환수 방식과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

1. 공공재정침해행위와 부정이익 환수의 필요성
2. 이원적 환수체계와 그 적정성
3. 부정이익 환수규정(제8조)과 제재규정(제9조 이하)의 관계

IV. 제재부가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성

1. 부정이익 환수의 불충분성과 추가적 제재의 필요성
2. 제재부가금 사유 및 부과금액의 적정성 여부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및 적용대상의 적정성

V. 제재사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제재수단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
2. 적합성(방법의 적합성) 및 필요성(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판단
3. 협의의 비례성(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판단

VI. 결론

I. 서: 입법취지의 정당성과 제도적 장치의 적절성

- 최근 공공재정침해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의 입법취지의 정당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 문제는 목적의 정당성이 당연히 수단의 정당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동 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제재수단들이 과연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인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특히 부적절한 수단 내지 과도한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법취지 자체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부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공공재정의 개념 및 성격

1. 입법의 목적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의 설정

- 동 법안의 입법목적이 공공재정에 대한 불법적인 손해의 야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목적을 달성을 위해 그 대상을 먼저 명확하게 확정·한정할 필요가 있다.
- 그런 맥락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공재정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동 법안에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명확하게 정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을 빠뜨리거나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체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2. 공공재정의 개념과 법안에 따른 범위 설정의 적정성

- 동 법안의 공공재정은 제2조 제4호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또는 제2조 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자를 통하여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전, 채권, 물품 등 일체의 재산”으로 정의되고 있다.
- 이처럼 공공재정의 범위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기금으로 조성된 것 이외에 공공기관 자체로 조성 관리 하는 금전 또는 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입법목적과 동 법안의 입법목적이 다르고, 허위·부정 청구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공공재정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성질상 공공기관과 무관한 재정이 아닌 한-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3. 공공재정의 성격과 공공재정침해행위에 관한 규정의 적정성

- 공공재정을 이른바 ‘눈 먼 돈’으로 취급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하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에 기초하여 형성된 공적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오너 없는 기업처럼-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안에서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 동 법안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재정의 부정청구 등 침해행위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은 시행 과정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과실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소납부 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인지도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의 경우에도 지연 과태료 이상의 무거운 제재가 필요할 정도로 공공재정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동 법안 제2조 제6호의 규정들은 -전체적으로 재구성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반의 유형 및 정도와 제재의 강도를 연계하는 정도의 보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법안에 따른 부정이익의 환수 방식과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

1. 공공재정침해행위와 부정이익 환수의 필요성

- 공공재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침해행위의 예방이 최선일 것이지만, 일단 침해행위가 발생된 이후에는 부정이익의 환수를 일차적 목표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 물론 부정이익의 환수만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 모든 조치들에 앞서 부정이익을 그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환수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 그러나 환수의 필요성이 곧 환수의 방법 내지 체계의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 법안의 환수체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이원적 환수체계와 그 적정성

- 동 법안은 제8조에서 부정이익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제1항과 제2항에서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과 제4항은 공공기관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 이는 행정청이 주체인 경우와 그밖의 공공기관이 주체인 경우에 환수의 방식 내지 환수에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규정 체계상 행정청인 공공기관과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인상을 준다.

- 또한 행정청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동 법안 제9조 이하에 따라 제재 부가금을 행정청이 부과·징수하는 반면에 그밖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동 법안 제19조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도 -비록 그 자체로서 당연히 위헌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3. 부정이익 환수규정(제8조)과 제재규정(제9조 이하)의 관계

- 동 법안의 규정체계상 제8조는 부정이익의 환수에 관한 규정이고, 제9조 이하의 환수금에 추가하여 부가되는 제재조치들에 관한 규정이다. 부정이익의 성격 및 유형에 따라 차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8조의 부정이익 환수는 일반적으로 인정하되, 제재조치들은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문제는 어떤 경우에 제8조의 환수규정만이 적용되며, 어떤 경우에는 제9조 이하의 제재조치들이 취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적정성에 있다. 즉, 불법행위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불법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그 기준의 명확성과 합리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제9조 제1항의 경우 제2조 제6호 가목~라목의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라목과 마목을 비교할 경우 오히려 마목의 경우가 불법의 고의성이 더욱 뚜렷한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으며, 과연 마목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Ⅳ. 제재부가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성

1. 부정이익 환수의 불충분성과 추가적 제재의 필요성

-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며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하여 동 법안에서는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참여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이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 특히 제재부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존의 제재장치들과는 달리 손해액의 최고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2. 제재부가금 사유 및 부과금액의 적정성 여부

- 동 법안 제9조 제1항에서는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를 제2호 제6호 가목~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라는 요건이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지 않다.
- 법안 제9조 제2항의 제재부가금이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함이 없이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2배, 3배 또는 5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인지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이는 법안 제19조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경우의 고려사항과 비교할 때 더욱 문제될 수 있다.
-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재부가금을 별도로 존치시키는 것보다는 통일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과 행정청의 제재부가금 산정 기준의 불일치는 결국 제재부가금에 대한 이의신청 내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동 법안 제9조 제2항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3.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여부 및 적용대상의 적정성

- 동 법안 제19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록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대해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공재정의 침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큰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재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최근의 논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입법적 도입이 -과도한 액수만 아니라면- 위헌은 아니라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 법안의 경우처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한정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논의가 제기될 것이며, 위헌논의 또한 촉발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 법안 제19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두어 적절하게 제한한 점을 고려할 때 위헌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V. 제재사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제재수단의 정당성 판단 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전제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수단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헌법적 기준이 비례성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이다.
- 과잉금지원칙은 적합성(방법의 적합성), 필요성(침해의 최소성), 협의의 비례성(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세 단계로 구성되며,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단만이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동 법안의 경우 각각의 제재수단들 하나 하나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적합성(방법의 적합성) 및 필요성(침해의 최소성)에 대한 판단

- 동 법안에서 사용되는 제재수단들은 공공재정의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적합성(방법의 적합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반면에 필요성(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과연 동 법안에서 제시하는 제재수단들 이외에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대안들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제재수단 이외에 동등 또는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필요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협의의 비례성(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판단

- 과잉금지원칙이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검토인 협의의 비례성(법익의 균형성)은 목적 달성을 통해 얻는 것과 수단 투입을 통해 잃는 것의 비교·형량이다.
- 동 법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불법적인 공공재정 침해행위를 전제할 때, 이를 막기 위해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등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역시 특별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그 요건 및 손해배상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Ⅵ. 결론

- 전체적으로 보아 많이 신경써서 만들어진 법안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제재수단의 적정성도 비교적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부정청구 등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며(이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소극적인 과소납부 등의 경우에 등가성 확인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제재부가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원적 구조는 지양하고, 법원의 판단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제정 방안 토론회



■ 이화여대 박 정 수 교수

공공기관 재정누수 차단을 위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 제정 방안 토론회

박 정 수(이화여대)

- 사회보험, 공적부조, 의료, 보건 등 복지예산을 필두로 한 의무지출의 증대, 고령화 등 재정압박 요인의 확대에 따라 재정집행의 책임성·효율성 제고 필요성 증가
 - 정부가 2018년까지 국가부채비율을 GDP의 36.3%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만 유지해도 재정부담이 상당한 현실에서 공약가계부에 반영된 복지과제를 증세없이 확대하면서 부채비율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은 한계.
 - 참고로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4년 국가채무비중은 31.8%였는데 반해 2014-2018계획에서의 동 수치는 35.1%로 늘어남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될 수 있으므로 재정수지를 중장기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채무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함.

- 2014년 대규모 세입결손 예측이 현실화되면서 연속 3년간 세수가 예산에 비해 징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임과 동시에 기존의 재정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김대중 정부에서 노동, 공공, 금융, 기업영역에서 과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구조조정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
 - 국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를 요구받았고, 국제 수준의 기업 투명성 강화와 부채비율 축소정책을 추진하여 금융, 기업, 노동, 공공 4대 분야에 일대 개혁을 단행했던 경험을 살려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필요한 130조 수준의 추가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80조원 수준의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환경이라는 인식공유가 필요함

- 공공재정의 효율성 향상은 공공재정 누수 관행 개선이 필수 조건이지만, 현행 관리체계는 재정누수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예방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점에 공감
 - 보조금법 등 개별법상 통제장치는 해당 사업에만 적용되어 다양한 분야의 재정누수 행위의 예방과 통제가 곤란
 - 특히,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재정누수는 은밀성으로 인하여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법령의 미비로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
 - 공직자가 수급자와 담합하거나, 브로커를 개입시켜 지원금 등을 편취하는 악의적인 사례 빈발

- 공공재정 낭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
 - 침해된 재정 환수 원칙과 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규정하여, 기존의 개별 법령 중심의 관리체계가 갖는 한계를 보완
 -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이어 예산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될 것임

-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수나 규모를 조직유지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지방사업이라고 해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가 발생
 - 이로 인해 부처간은 물론 동일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유사중복 보조금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극심한 재원낭비가 초래
 -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10년부터 연평균 5.3%씩 늘어나고 눈먼 보조금을 노리는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음
 - 권익위가 2008년 이후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의 46.9%가 보조금 관련 사건이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함

- 국가보조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나 개인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규모도 크게 늘어 2006년 30조원대에서 2014년은 55조원 수준에 이르며 국가 총 예산의 14%에 달함

- 2010년 경북 의성건강복지타운 시행사 대표 조모(44)씨는 자신이 시행을 맡고 있는 공사의 기성률(전체 공사비 중 얼마의 공사비가 투입됐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부풀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노림. 조씨가 빼돌린 국가보조금은 모두 18억원. 그는 이 돈으로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스포츠카인 '포르세'를 리스해 타고 다님.
- 2012년 K통상 대표 이모(38)씨는 러시아에 농장을 개발해 곡물을 수입하겠다고 해 해외농업개발기금 융자를 신청. 곡물의 안정적 수입원 확보를 위해 국가가 연 2%의 저리로 빌려주는 국책사업 기금. 이씨는 기업사냥꾼·사채업자와 짜고 무자본으로 인수한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관련 서류는 위조. 이씨는 72억여원의 기금을 빌린 뒤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
- 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적발된 사람은 모두 3300여 명. 부당 지급받거나 유용된 '혈세'는 1700억원에 달했음.
- 경찰은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177일 동안 어린이집 등 복지분야 보조금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였음. 총 2737명을 입건(31명 구속)해 894억원의 부정수급액을 적발. 검찰도 8월 23일부터 100일 동안 고액보조금 지급 분야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612명을 입건(96명 구속)하고 806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음.
- 합동 수사 결과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리가 확인됨. 보건·복지 분야의 부정수급액 적발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음.
-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브로커들이 연루되어 있는바, 영세 제조업체가 많은 지방공단지역에 불법거래를 조장한 후 보조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례. 2013년 경찰에 적발된 불법업체대표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컨설팅업체가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밝힘
- 향후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보기술, 건설, 해운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브로커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앙·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부당한 예산낭비에 대해 국민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제정법)'도 추진되고 있음.
 - 국민에게 국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시정하고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목표라고 함.
 - 구체적으로는 △2심제로 운영(1심 고등법원·2심 대법원) △원고 요건(19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 동의할 경우) △피고 요건(위법한 재정행위를 한 국가기관 등의 장) △소송 종류(위법행위취소소송·손해배상청구등요구소송 등 2건으로 구분) △포상금 지급 규정(국가기관이 재산상 청구권 취득시 최소 10분의 1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원고와 공익제보자에게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위법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
 - 정책실패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함.

- 국고보조금을 위시한 공공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공공재정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발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상당수 법률에 환수근거가 없거나,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여부를 재량으로 규정
 - 환수근거가 있어도 환수 절차, 미납시 강제수단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 집행이 곤란한 경우 다수
 - 이번 법제도로 부당청구가 근절되기는 어려워도 획을 긋는 변화를 기대하게 됨
 - 부정청구 등으로 수익자등이 얻은 금전이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익자등의 부정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정 또는 민사상 조치 의무 규정
 - 수익자등의 부정청구등으로 행정청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행정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관 행정청에서 환수처분

- 수익자등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이익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 환수 처분함
- 기본적으로 부정이익 금액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액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전력 횟수에 따라 2~5배 부과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

□ 허위·부정 청구의 신고는 기업 등 민간부문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철저한 신고자 보호시스템 마련이 필수라는 점이 보다 강조되어야 함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장, 신분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
- 특히, 징벌 환수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되므로 기존 보상제도보다 인센티브가 늘어나 신고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 권익위가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제도개선 등 공동 대책 추진하는 부분은 총리실 등과 협업이 이루어져야 함

- 각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공공재정 누수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를 위해 제도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 전체 공공기관의 허위·부정 청구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 빈발 분야 등을 파악하여 제도·정책개선에 활용
- 주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그리고 보조금이 많은 문화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당사자가 될 전망이므로 정부3.0의 차원으로 접근 바람직

재정누수의 적폐 근절책 필요하다



■ 흥사단 투명사회본부 송 준 호 공동대표

재정누수의 적폐 근절책 필요하다

송 준 호 *
(안양대 교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I. 들어가며

국민행복 시대를 맞아 복지예산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 지 창조적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비의 지속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일자리 지원의 보조금도 불가피하다. 결국 이러한 복지비, 연구개발비, 각종 보조금의 증대는 재정의 불건전성으로 이어져, 자칫하면 국가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다. 더욱이 공공의 지원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은 국가 기강을 해이하게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국고 손실을 막고 국민의 부패 유혹을 방지하기 위한 근원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도적으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뒤늦게나마 고무적인 일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허위·부정청구가 드러날 때마다 부패의 단면으로 언론보도로 고발만 하였지, 구체적인 재발 방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범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에 공감을 표시한다. 이 것 또한 우리 사회의 적폐 하나를 도려내는 일이다.

II. 법안의 검토

1. 법안 명칭을 단순화하자.

국민들에게 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안명이 단순해야 한다. 「공공

* @daum.net, 010-****-****

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환수법」으로 바꾸면 단순하면서도 정부의 재정 누수 금액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대상의 확대이다.

소위 김영란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80%를 넘는 사립학교는 사실상 공의 기관이지, 사적 기관은 아니다. 정부는 중고등학교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에도 국가장학금을 비롯해 각종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당연히 공공기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제2조(정의) 1호 라목의 '각종 국립·공립 학교'를 '각종 학교'로 수정해서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학교도 이 법안에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부정이익 환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수익자등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4항). 범죄행위가 인정되는데 굳이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을 달아서 제한하려고 하면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 그 결과 환수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제7조의 부정청구 등의 중지 조치 역시 '상당한' 근거라는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중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고 있다.

4. 제재부가금은 올려야 한다.

행정청은 환수금에 추가하여 부정이익금 상당의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제9조). 이 경우 제9조 2항의 1호에서 3호까지를 보면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제재부가금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부가금이라면 부정이익금을 취하려는 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

5. 가산금 징수기간을 늘려야 한다.

법안의 제12조 1항에서는 가산금 징수 기간을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이익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한 가산금을 60개월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60개월까지 납부 유예를 하는 것이다. 법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간의 제한을 두지 말고 가산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납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6. 참여제한의 연장이다.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제한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제15조 1항). 제재부가금을 냈다는 것은 이미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2년이라는 기간은 관대하다. 적어도 3년 내지 5년으로 하여 법안의 집행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7. 시효의 연장이다.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정이익 반환 명령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이는 부정청구를 한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부정청구자에게는 시효를 정하지 말고 반드시 부정청구금을 환수하고, 이의 제재부가금을 내게 하여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설사 행정력의 한계로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 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8. 명단 공표에서 금액의 하향 조정이다.

법안 제22조에서는 부정이익 금액이 합계 3천만 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위 상습부정청구행위자에 대한 제재이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3천만 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준하는 거액이다. 명단 공표의 금액 한도를 1백만 원으로 낮추어 누구라도 부정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없도록 경종을 줄 필요가 있다.

9. 신고자 보상의 자동 지급이다.

부정청구를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신고자의 입장에서 신청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권익위가 보다 능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 수입액과 절감액이 큰 경우에는 표창도 고려해야 한다.

10. 벌칙조항의 신설이다.

법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벌칙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 법안은 벌칙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Ⅲ. 나가며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명목의 보조금과 지원금, 정책자금의 부정청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지원은 있는데, 부정 청구에 따른 환수는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개별 관련법에 환수의 규정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러한 보조금 등을 눈 먼 돈이라고도 한다.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도 한다. 그만큼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도덕적 해이가 심하였다.

그 결과 국가 재정의 누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각종 명목의 보조금과 지원금, 정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콘트롤 타워를 가지고 산재해 있는 개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은 그 대안 중의 하나이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 조선일보(전 논설위원) 김 동 섭 기자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조선일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복지예산 100조시대에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이나 각종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돈이 갈데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새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이나 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으로 부정을 저질러도 별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게 어느새 일상화됐다. 현재 정부가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대상이 복지관련에서만도 1000만명에 달한다. 실제 이들에게서 부정허위 청구라는 사실을 밝히려면 감시 인력이 그만큼 필요하고 실제 확인하기까지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 각부처마다 이에대한 대처방안이 다르고 징벌적 효과도 없는 경우가 있어 당사자들에게 죄의식을 불러오지 않는 현상이 만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든 것은 획기적이고 부정허위청구를 없애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1. 가장 눈에 띄는 조항이 제7조의 부정청구 등 중지 등 조치 항목이다. 부정청구로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재정상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관해당 부정청구 등의 중지 관해당 공공재정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권그밖에 부정청구 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많이 발견되는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를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경우, 2009~2014년 786개 사무장 병원을 적발해 5753억원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의사 자격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건강보험에서 막대한 요양급여를 받은 것을 반환하라는 조치였다. 하지만 실제 돌려받은 금액은 376억원에 그쳐 환수율은 8%에 그쳤다. 이유는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폐업부터 한다. 그 때문에 계속 영업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주는 급여에서 부정청구액을 빼고 주면 되지만, 행정처분을 내리기전에는 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때문에 부정청구로 판단할 근거가 생겼을때 진료비 지급을 정지하면 부당 진료비 환수 조치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허위와 부정청구, 부당청구, 과잉청구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관련 기관에서 논쟁은 부당청구와 과잉청구가 문제다. 허위와 부정청구는 나름대로 명확해 질 수 있다. 하지만 과잉청구는 의료계가 꼭 필요한 치료를 했는데도 엄격한 의료법에 의해 과잉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되는데 뒤집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도 마찬가지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이나 장애인 돌보미들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기준을 8시간으로 삼았는데도 4~5시간을 돌봐주고 금액을 모두 받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양자의 합의나 필요에 따라 4~5시간 아동을 돌봐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도 모두 범법자로 되는 것은 고려할 문제다.

3. 부정청구자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 가령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작년에도 6만명가량이 부정청구로 급여중지 중이다. 기초연금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수 없고 소득과 재산을 정부가 계산해줘야만 알 수 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수급자를 찾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소득 하위 70%의 420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을 넘으면 부정수급자가 된다. 하지만 개인으로 볼때 내 소득과 재산이 기준선을 넘는지 알 길이 없는 게 현실이다.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공식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 계산 방식이 달라, 대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이사가면 당장 변화가 온다. 통장이 여러개로 분산되어 있으면 금융 자산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모를 수도 있다. 전세비가 오르면 소득도 따라 오르게 되는데 본인이 이런 것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전산망에 의해 가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자료를 입수한 시기가 6개월이나 4개월마다 한번씩 새로운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금새 밝혀지지 않아도 몇개월간은 부정청구자가 될 소지가 있다.

또 사망자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데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사망시기 처리시점이 늦어 정부가 1~2번쯤은 더 지급하는 것이 아니냐고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사망자의 기초연금을 환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사망자를 복지전산망에서 빨리 가려내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환수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다. 사망 자료를 정부가 빨리 입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이다.

4. 보육료와 양육수당도 마찬가지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다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반대로 집에서 아이를 돌봐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시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가 일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등으로 이중지급, 중복수령이 발생한다. 올해 들어서만도 5161건으로 5억9000만 원에 달한다. 2011년에는 1만여건이 넘다가 최근에는 연간 7000~8000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산 시스템의 문제다. 유아학비는, 보육료, 양육수당 지급이 3원화로 되어 있고 개별적 업무처리 소요 시간차때문에 사전에 중복차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개인에게 환수하려고 하면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5. 정부가 돌봄과 각종 지원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산모들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바우처 카드로 경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나중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올 예산만 1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제공기관과 담합해 바우처를 속칭 깡으로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도 150건에 1억5100만원이 부정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어 이번에 제정을 하려는 허위 부정 청구에서는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과태료 처분과 제재 부담금간의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양쪽이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회서비스바우처도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다만 산모에게 지급되는 고운맘카드는 보편적 복지의 일종이다. 그러나 이번 법에서 기초수급자들의 부정청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아마도 저소득층의 사정이나 저소득층에게 부정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어려움을 감안한 결과일 것이다. 사회서비스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부정청구 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20억원을 보상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다. 부정 청구나 지급액이 큰 것은 내부자 신고가 아니면 밝혀내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려면 신고에 의한 보상을 크게 해주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도 실제 환수 예상금액을 따져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사무장병원에 부당이득을 신고해 포상금으로 1억원을 받

기도 하고 있다. 9월부터는 이미 포상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올린 상태다.

7. 부정행위자 공표는 단순한 공표로서는 해결책이 안된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등 부정행위자는 현재도 공표대상이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운영 정지되거나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정지,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 보육교사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설폐쇄·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 간, 시설 운영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처분기간의 2배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동안 지자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이사랑보육포털 내 정보공개시스템에 공표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표제도를 운영해도 별반 효과를 못보고 있다. 인터넷에만 띄우므로 실제 공개효과가 적다. 여기에 덧붙여 일간지나 전문지 등에 1회이상 공고하는 제도가 덧붙여야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8. 이 법안은 공공재정을 다루는 모든 기관과 개인들에게 적용된다. 국회도 적용이 되는데 과연 이 법안이 제대로 성안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해당사자가 많아 이 법안에 대해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발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다른 법안에서 이미 과태료 등을 매기고 있으면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제 이 법안에서 적용될 대상이 얼마가 될지를 따져 봐야 한다.

가령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비서관을 채용할 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취해 여러명에게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실제 비서관들에게 급여액 중 일부는 반납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연 이처럼 자신들에게도 비수가 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지 지켜볼 문제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 노 욱 소장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박 노 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사회복지, 연구개발, 중소기업 진흥, 농어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기업, 국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와 재정지출 증가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이 수혜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의도하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일부 분야에서는 재정지원 전달 및 관리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에, 빠른 속도로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 부작용으로 정책이 의도하는 수혜자에게 정확하게 재정지원이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부적격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의 저하가 이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지원이 창출하는 정책 효과 보다,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의 확대에 따라, 정부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부정 청구에 따른 수급과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더라도 징벌적 조치가 미약하여, 부정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았다. 그러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징벌적인 성격을 명확히 한 내용을 포함하여 허위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증가시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동안 이러한 법적 근거 자체가 미비하여 허위 부정 청구에 대한 대처 방안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이번 법안의 추진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간단히 논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법안의 실효성은 실제 징벌적 제재부가금의 징수가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국세 지방세의 경우도 체납액의 징수에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징수가 용이하지 않다. 그동안 다양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지급된 정부 재정지원의 관리가 어려웠던 것은, 규정자체의 미비와 더불어 행정적 인프라와 행정 인력이 미비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의 추진으로 인해 법적 근거 자체는 강화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것은 실제 적발 및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 인프라와 역량의 확보이다. 이러한 중요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둘째, 정부 재정지원 조건의 합리성 제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지원 수준이나 조건 자체가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민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적정한 행위를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통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연구개발 수행자가 관행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정지원 조건의 불합리성 또는 비현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에 대해 암묵적으로 인정해온 측면이 있다. 재정지원 조건 중 비현실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수혜자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 이 명 선 팀장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에 대한 토론



■ 안정행정부 재정관리과 최 두 선 과장



MEMO